

MI(Market Intelligence) 브리프

제 목	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			
날 짜	6.23	MI조	시장정보	MI대상

- ◆ 금년 7.12일부터 DC 및 IRP 퇴직연금에서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디폴트옵션 제도가 시행될 예정
- ◆ 디폴트옵션은 국내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고, 목표시점펀드(TDF) 성장세 확대 등을 통한 자본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 - ① 디폴트옵션을 도입·운영중인 주요국 퇴직연금의 최근 5년 수익률은 7~9%대(연평균)의 높은 수준 ② 현재 국내 퇴직연금 대부분이 예·적금 등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TDF의 경우 다양한 국내외 자산으로 구성

I 도입 배경

- 퇴직연금*의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(이하 '디폴트옵션')가 금년 7.12일부터 시행**될 예정

* 2021년말 현재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95.6조원으로 사업장 도입률(15년말 26.2% → 20년말 27.2%) 및 가입자 비율(48.2% → 52.4%) 상승에 따라 지속 증가하는 추세

** 19.11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계획 발표 → 21.12.9일 관련 법(「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」) 개정안 국회 통과(법률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)

- 그간 국내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관심 부족 및 보수적 투자성향* 등으로 전체 퇴직연금의 약 90%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면서 낮은 수익률**(최근 5년간 1~2%대)이 지속

* 퇴직연금 가입상품 교체주기: '한 번도 교체한 적 없다' 68.4%
선호하는 퇴직연금 운용방식: '원리금 보장형 상품' 58.1%
(한경·미래에셋증권 「퇴직연금 설문」, DC형 가입자 대상, 2021.7월)

** 2017년 1.88(%) → 18년 1.01 → 19년 2.25 → 20년 2.58 → 21년 2.00

- 이에 DC 및 IRP 퇴직연금*에서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디폴트 옵션 도입을 의무화

* 확정급여형(DB ; Defined Benefit) : 퇴직급여가 산출공식(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년수)에 따라 사전에 결정됨에 따라 사용자(회사)가 적립금의 운용방식 및 결과에 책임
확정기여형(DC ; Defined Contribution) : 사용자(회사) 부담금액이 사전에 결정(연간 임금총액의 1/12 이상)되며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 및 결과에 책임
개인형퇴직연금(IRP ;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 : 근로자가 개별 가입

작성자 : 금융시장국 금융시장연구팀 김현욱 조사역

※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.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— 아울러 디폴트옵션 상품은 여타 금융투자 상품과 달리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%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*

* 2022.5.17일 「퇴직연금감독규정」 개정안 예고(7.12일 시행 예정). 현재는 원리금보장상품 등 예외적 상품만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%까지 편입할 수 있고 주식형 펀드 등 여타 금융투자상품은 최대 70%까지만 편입할 수 있음

II 주요 내용

□ (디폴트옵션 범위) ①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(목표시점펀드, 장기가치상승 추구펀드, MMF, 인프라 펀드)와 ②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구성

디폴트옵션 범위

구분	내용	
① 펀드	목표시점펀드 (TDF ; Target Date Fund)	은퇴연령 등 투자목표시점에 따라 위험자산 편입비중을 자동으로 조정
	장기가치상승 추구펀드 ¹⁾	분산투자자와 주기적 자산배분을 통해 장기수익 추구
	MMF	안전한 단기금융상품(RP 등)이나 국채 등에 투자하여 안정성을 추구
	인프라펀드	국가 정책 등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
② 원리금보장상품	은행 예·적금, RP, 국채, 통안채, 주금공MBS, 채권형·채권혼합형펀드,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등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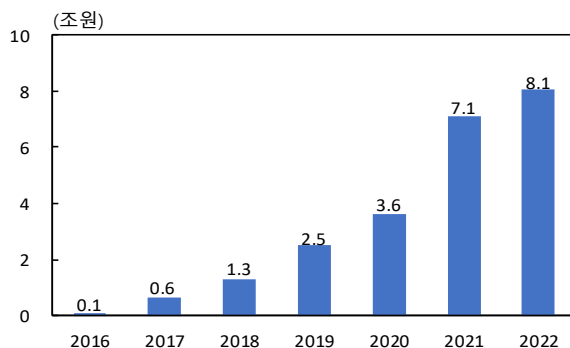
주: 1) 투자자가 정기적으로 본인의 위험성향을 확인하여 포트폴리오 위험을 조정

○ 이 중 목표시점펀드*(TDF ; Target Date Fund)는 은퇴연령 등 투자목표 시점에 따라 위험자산 편입비중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펀드로서

장기투자를 전제로 하고, 가입자의 지시 없이 리밸런싱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으로 주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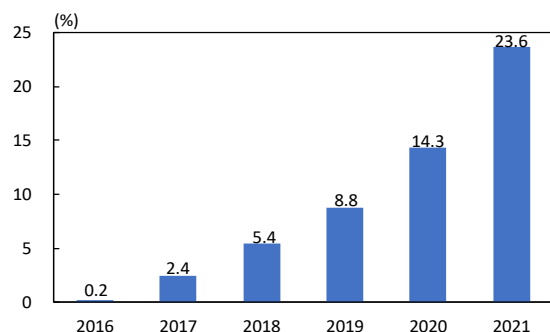
* 국내 TDF는 2016년 도입 이후 급성장. 설정액이 16년말 658억원에서 첫 해 약 10배, 이후 거의 매년 2배 수준으로 증가하여 22.6.17일 현재 8.1조원에 달하고, 퇴직연금펀드 내 TDF 비중도 16년말 0.2%에서 21년말 23.6%로 큰 폭 확대

국내 TDF 설정액 규모 추이¹⁾



주: 1) 2022년은 6.17일 기준
자료: 펀드가이드

국내 퇴직연금펀드 내 TDF 비중¹⁾



주: 1) 설정액 기준 전체 퇴직연금펀드 내 TDF 비중
자료: 자본시장연구원

□ (적용절차) 정부 승인*을 받은 디폴트옵션을 사용자가 노사합의**(퇴직연금규약)를 통해 도입하고, 개별 가입자는 그 중 하나의 디폴트옵션을 지정***

* 퇴직연금사업자가 일정요건을 갖춘 디폴트옵션 상품을 승인 신청 → 고용노동부 심의·승인

** IRP는 개인이 개별 가입하므로 미해당(가입자가 바로 디폴트옵션 지정)

*** (예) 퇴직연금사업자가 디폴트옵션으로 ① A운용사의 TDF, ② B운용사의 채권형 펀드, ③ C운용사의 MMF 등을 제시 → 가입자가 ① TDF 선택

○ 가입자가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고, 통지 이후 운용지시 없이 2주가 경과하면 적용*(총 6주 소요)

* 한편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에도 가입자가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(opt-out)하거나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 전환(opt-in)하는 것도 가능

Ⅲ 기대효과 및 평가

□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인한 DC 및 IRP로의 전환 가능성, 연금사업자의 운용능력에 대한 관심 환기 효과* 등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 및 노후대비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* 현재는 퇴직연금(DC 및 IRP) 수익률이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연금사업자의 운용능력 지표로 보는 데 한계

○ 주요국 중에서는 미국·영국·호주 등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도입*·운용하고 있으며, 최근 5년 기준 수익률은 7~9%(연평균)대의 높은 수준을 시현

* 미국(1981년 도입, 2006년 TDF 도입으로 활성화), 영국(2012년), 호주(2013년) 등

최근 5년간 퇴직연금(DC형) 수익률¹⁾ 비교

미국 ²⁾	호주 ³⁾	영국 ⁴⁾	한국
7.4	8.0	9.8	2.4

주: 1) 2021년(미국은 2019년) 기준 과거 5년간 연환산수익률(기하평균)

2) 401k Type

3) 전체 퇴직연금수익률(다만 DC형이 96.1%를 차지)

4) NEST 2040 Retirement Fund

자료: 금융감독원, DOL, APRA, NEST

□ 또한 목표시점펀드(TDF)의 성장세가 확대*되면서 자본시장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

* 미국도 2006년 TDF 등 투자위험이 있는 펀드들이 디폴트옵션에 추가된 이후 관련 시장이 급성장(미 퇴직연금 가입자중 TDF 보유 비중: 07년말 25.5% → 19년말 60.2%, 대표적 DC형인 401k 기준)

- 현재 국내 퇴직연금은 대부분 예·적금(37.1%, 21년말 기준), 금리 확정형·최저이율보증 보험(37.2%, 형식은 보험이나 실질은 예금과 유사) 등 예금상품에 집중된 데 반해

TDF의 경우 다양한 국내외 자산*(펀드·ETF 등 49.2%, 주식 19.5%, 채권 11.6% 등)으로 운용

* TDF시장 점유율 1~3위(전체의 73% 차지, 22.6.17일 설정액 기준) 운용사(미래에셋증권, 삼성자산운용, KB자산운용)의 TDF 자산구성비를 가중평균

- 최근 자산운용사들은 디폴트옵션 시행에 대비하여 TDF 기반 ETF 첫 출시(6월말)를 계획하는 등 다양한 TDF 상품 개발·제공에 적극적인 모습

□ 다만 주요국과 달리 ① 개별 가입자*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하고 ② 디폴트옵션에 원리금보장상품이 포함된다는 점에서

퇴직연금의 운용지시 권한 전환(가입자 → 연금사업자 또는 사용자)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및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도모라는 디폴트옵션 본연의 기능이 다소 제약될 소지

* 디폴트옵션 상품을 여타 국가(사용자(회사)가 지정)와 달리 개별 가입자가 지정하게 한 것은 손실책임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

- 디폴트옵션에 원리금보장상품이 포함된 일본의 경우 디폴트옵션 도입(2018년) 이후에도 70% 이상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는 등 제도 도입 효과가 미진*

* 일본은 디폴트옵션 제공이 임의사항인 영향도 작용

주요국 디폴트옵션제도 비교

국가	도입 시기	의무화 여부	디폴트옵션 범위	가입자의 디폴트옵션 사전지정
미국	1981	X	투자상품	X
영국	2012	O	투자상품	X
호주	2013	O	투자상품	X
일본	2018	X	투자상품, 원리금보장	X
한국	2022	O	투자상품, 원리금보장	O

<참고>

국내 퇴직연금 현황

□ 2021년말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95.6조원으로 최근 5년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(2016년말 147.0조원)

○ (제도유형별) **확정급여형(DB형)**이 58.0%(171.5조원)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**확정기여형(DC형)** 25.9%(76.4조원), **개인형 퇴직연금(IRP)** 15.7%(46.5조원) 순*

— 최근 직접투자에 대한 관심 증대로 **DC형 및 IRP 비중이 상승한 가운데**, 특히 **IRP 비중은 세제혜택*** 등에 힘입어 상승세가 빠름**

* 개인연금저축·IRP 납입분에 대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(2015년 시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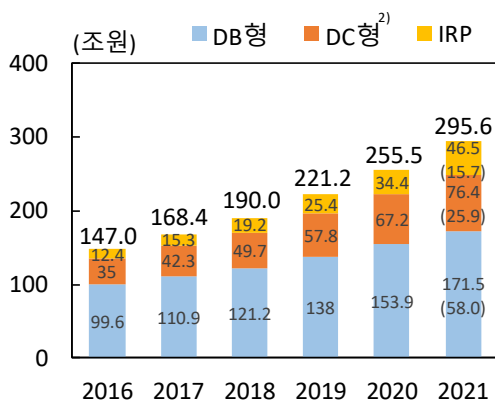
** 퇴직연금중 DC 비중 : 16년말 23.8% → 21년말 25.8%
IRP 비중 : 16년말 8.4% → 21년말 15.7%

○ (상품유형별) **원리금보장형이 대부분을 차지(86.4%, 255.4조원)**하고 있으나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는 **DC 및 IRP에서의 실적배당형 상품 증가에 따라 원리금보장형 편중이 다소 완화***

* 원리금보장형 비중(% , %p)	16년말(A)	21년말(B)	B-A
퇴직연금 전체	93.2	86.4	-6.8
DC	83.4	79.3	-4.1
IRP	82.2	65.7	-16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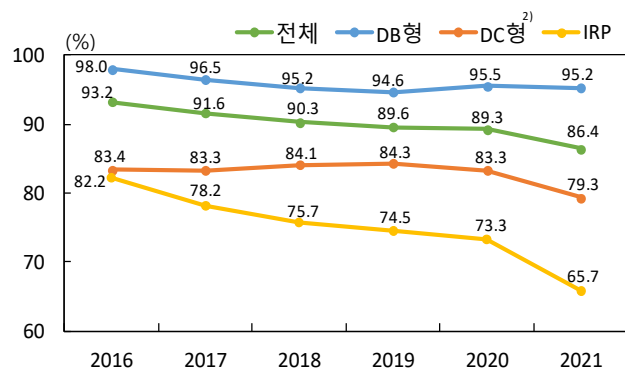
— 다만 DB형은 원리금보장형 편중(21년말 95.2%)이 지속되고 있으며, DC 및 IRP도 여전히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은 상황

퇴직연금 적립금 추이¹⁾



주: 1) ()내는 비중, 2) IRP특례 포함
자료: 금융감독원

원리금보장형 비중추이¹⁾



주: 1) 2021년 기준, 2) IRP특례 포함
자료: 금융감독원